

| | | |
|------|-----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| 제 호 | 의결사항 |
| 의결 | 2021. . . | |
| 연월일 | (제 회) | |

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| 고령군수 (농업정책과장) |
| 연 월 일 | 2021. . . |

법무통계담당 심사필

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|
| 의안 번호 | |
|----------|--|

제출일자 : 2021. . .

제 출 자 : 고 령 군 수

1. 개정이유

- 가. 제2020년 3차 자치법규 기획정비계획에서 불필요한 절차·비용 발생 등으로 민간위탁 협약 체결시 공증의무 규정 개정을 지도 권고
- 나.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위탁과 관련한 사항을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개정하여 위탁업무 처리 기준 일원화 등으로 고령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내실화

2. 주요내용

- 가. 소재지 위치 도로명주소로 변경 (제3조)
- 나. 위탁 협약 내용 공증 규정 삭제(제6조 제1항)
- 다. 고령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위탁 관련사항을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도록 개정(제6조~제7조)
- 라. 운영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개정(제9조)

3. 개정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
- 나. 예산관련사항 : 별도 조치 필요없음.
- 다.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: 2021. 09. 13. ~ 2021. 10. 03.(의견없음)
- 라.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마. 규제영향 분석 결과 : 해당없음

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기족리 768번지”를 “성산로 839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.

- ① 군수는 산지유통센터의 관리·운영 위탁시 「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의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과 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한다.
- ② 위탁기간은 4년 이하로 하며, 수탁기관 선정·평가 등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「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그 밖에 위탁과 관련하여 본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제3조(위치) 산지유통센터는 고령군 성산면 <u>기족리 768번지</u> 일원에 둔다.</p> <p>제6조(위탁계약) ① <u>수탁자는 군수와 위탁 운영계약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위탁기간은 3년 이하로 하며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고령군 산지유통센터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제1항에 의한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<u>시설물 설치, 물류장비 확보와 인력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</u></p> <p>2. <u>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 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</u></p> | <p>제3조(위치) ----- ----- <u>성산로 839</u> ----- --.</p> <p>제6조(위탁계약) ① <u>군수는 산지유통센터의 <u>관리·운영</u> 위탁시 「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의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과 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한다.</u></p> <p>② <u>위탁기간은 4년 이하로 하며, 수탁기관 선정·평가 등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「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 제></u></p> |

3.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(산지수집능력, 취급물량 확대 분산능력, 투자계획,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)

4. 그 밖의 산지유통센터 위탁관리·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

④ 군수는 운영주체를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제7조(위탁의 취소 등) ①·② (생략)

<신 설>

제9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
<삭 제>

제7조(위탁의 취소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그 밖에 위탁과 관련하여 본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9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고령군 농업정책과 | |
| 연 락 처 | (054) 950-7331 |